

#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권혁남(전북대 신방과 교수)

## 1. 머리말

언론의 책임 문제를 빼놓고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이요, 음과 양의 관계라 할 수 있다. 17세기 영국의 J. Milton의 Areopagitica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언론철학은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의 대명사인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을 탄생시킨다. 일명 열쇠구멍 저널리즘(Keyhole Journalism)이라고도 불리는 황색저널리즘은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20세기 들어 언론계 내부와 사회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언론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부르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40년대에 사회책임주의 언론철학이 탄생하게 된다.

사회책임주의는 자유주의 언론철학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 중심 철학은 언론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면 언론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언론에게 자유를 주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동시에 묻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제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고삐를 채우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언론철학과 사회책임주의 언론철학이 모두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유의 개념과 내용은 다르다. 자유주의 언론철학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free from)이고, 사회책임주의 언론철학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free for)이다. 사회책임주의 언론철학의 자유의 개념은 적극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는 시민 토론광장(civic forum) 역할로서 미디어가 공공 문제에 대한 다원적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는 파수견(watchdog) 역할로서 미디어가 권력 남용을 감시해야 한다. 셋째는 동원 주관자(mobilizing agent) 역할로서 공중들의 정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역기능을 낳게 된다. 특히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다”(bad news is good news)는 언론의 전통적인 상업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진리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리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씀과 동시에 자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진리 추구, 언론 자유 그리고 자율적 책임 등이 바로 언론이 준수해야 할 가치로서 언론 윤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현실(객관적 현실)과 생산된 뉴스(상징적 현실) 사이에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일치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언어상의 한계, 보도 제작 관행, 언론인의 특성, 기술적 요인 그리고 보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된 뉴스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바로 오보이다. 물론 실제와 완전히 같은 뉴스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언론활동에서 오보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보를 인정할 수도 없고, 언론과 언론인 역시 오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나 오보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511건의 중재신청사건 중 무려 493건(96.5%)이 명예훼손이고, 신용훼손은 10건(2.0%), 기타 8건(1.6%)이다. (언론중재위원회, 2003).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손상된 인격권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보도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 어김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리거나 ‘겁주기 전략’(intimidation policy)차원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연출망 의식이 강하고 행동이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전라북도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 2002년에 전북은 경기, 광주중재부에 이어 지방에서 3번째로 많은 언론중재 신청건수(25건) 1)를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론보도 청구권과 언론중재, 그리고 언론계의 예방책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언론사별로 보면 전북일보 8건, 새전북신문 5건, 전라일보 4건, 전북중앙 2건, 전북도민일보 1건, 전주MBC 3건, 남원신문과 시사전북이 각 1건이다.

## 2. 명예훼손죄

### 1) 명예훼손죄의 개념

####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김재협, 2002).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죄(313조)도 성립될 수 있다.

법정형량도 통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론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그 형량이 높게 되어 있다. (김재협, 2002).

한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 (2)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형사적으로 다스려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형사사건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 등에 대해 신체형이 과해지는 경우보다 벌금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실 수사관행이나 재판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비록 그 행사에 있어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국가에 대한 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죄이므로 사회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재협,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비중이 구미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민사분쟁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사건화 하여 해결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에 관한 일반적 경향과 연관이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고 고소를 통하여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주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는 마음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김재협, 2002).

## 2)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1) 단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러면 ‘명예’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대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부여하는 평가, 즉 외부적 평판”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한 본인의 감정·느낌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이 명예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보도로 인하여 본인이 기분 나빴다고 하여 그 보도가 명예훼손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도를 읽은 일반인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게 될 때 명예훼손 보도가 되는 것이다. (전원열, 2002)

## ②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할 것

### ■ 사실적시의 방법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揭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고, 그 사실의 시기·장소·수단 등까지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전취지(全趣旨)나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다. 또한 단순한 개인일 필요는 없고 일정 범위 내의 단체 구성원을 특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서울시민 등과 같이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한 것을 막연한 표시라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김재협, 2002).

사실 적시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직접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경우도 된다. 즉,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이에 반하여 ‘도둑놈’ 및 ‘죽일 놈’,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 ‘애꾸눈, 병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전원열, 2002).

### ■ 적시된 사실의 진실여부

적시되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실은 행위자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추측한 사실이든 풍문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자가 적시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상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장래의 사실은 대체로 가치판단으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의 대상으로 볼 것이나,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의 사실을 예측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김재협, 2002).

## ■ 공지의 사실 적시

공지(公知)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그 사실 적시로 다시 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긍정하고 있으나, 이미 신문 등에 기사화된 공지의 사실은 다시 적시되어도 명예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성이 없이 불가별적 불능범이라는 학설도 유력하다. (김재협, 2002).

### ③ 공연성을 갖출 것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고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알려졌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판례는 대체로 전파될 가능성만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나 학설은 대부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서,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공연성이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김재협, 2002).

### ④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이보다 좁다. 다만 그 고의는 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로도 족하다. (김재협, 2002).

##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① 출판물 등의 개념과 범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반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보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김재협, 2002).

따라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있는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

쇄물인 유인물, 단체조합장 선거에 있어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은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장의 전산망이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판물 등에는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비정기 간행물, 방송은 물론 기타 통신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디오나 녹음테이프 등은 그 전파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형법개정시 제외하였다고 하나, 정보화사회에 있어 음반이나 비디오물도 전파가능성, 명예훼손 위험성이 크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재협, 2002).

## ② 비방의 목적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목적범(目的犯)으로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단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명예훼손의 정도와 위험성이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 대중에게 직접 적시됨으로써 증대된다는 객관적 이유 때문이다.

한편 형법이 이러한 비방의 목적성을 구성요건화 한 것은 출판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갖는 공익성과 그로 인하여 본질상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가 많은 속성을 감안하여 언론자유를 위축을 최소화하고 언론매체의 여론형성의 기능 등 공적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김재협, 2002).

##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비적용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 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공공사항에 관

한 보도 및 공공사항 결정권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책결정의 투명화로 언론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재협, 2002).

#### ① 보도내용의 진실성 정도

우선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진실성의 정도는 통상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족하다. (김재협, 2002).

#### ②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의 정도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상당성(相當性)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기자의 경우는 기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그 기사 보도시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정도와 내용, 제보자에 대한 신뢰도, 기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이므로 통상인보다 당연히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확하고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판례는 추상적으로 상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용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명백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전문 사실, 풍문에 의한 사실, 다른 신문이나 통신사의 통신기사를 옮기는 경우에도 자기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에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발표나 보도자료 등 공식적 자료에 의하여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조사의무가 감정되나, 그 발표된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발표에 의한 보도의 경우에는 범행사실 등을 단정적으로 기사화할 것이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그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협, 2002).

한편 대법원도 ‘공적인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③ 보도내용과 목적의 ‘공공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객관적으로는 사실 자체의 성질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객관적인 사실의 공익성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가 공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다만 주관적 요건도 법문상으로는 ‘오로지’라고 하지만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족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廣狹),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김재협, 2002).

일반적으로 공적 인물의 전과사실(특히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전과사실), 범죄혐의사실 등에 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 전과사실이나 건강상태, 가정이나 성생활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반 개인은 자신의 전과가 공개되지 않음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의미가 없음에도 함부로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사적 사항에 관한 사실의 공표도 공표의 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김재협, 2002).

미국의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은 언론사가 자신에 대해 거짓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보를 보도하였다 할지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1964년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New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이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설리반 사건이란 미국의 남부 앨라배마에서 시민운동 데모가 있었을 때 주 관리가 흑인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하자 『뉴욕 타임스』가 이를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는데, 이 관리가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공인의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인 악의란 관리의 평판을 손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사실 재판정에서 뉴스보도가 권력 남용을 폭로할 목적이 아니라 악의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설리반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어떤 정부 관리도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다(권혁남, 2002).

한편 사회의 관심거리가 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이른바 제한적·부정적 공인에 대한 전과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과의 내용 중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혹은 ‘기소중지’등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범인은 전과 몇 범”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김재협, 2002).

### 3. 반론보도청구와 언론중재

#### 1) 반론보도청구권

##### (1) 반론보도청구권의 개념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 규칙 제2조 제4항). 왜냐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신속한 반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 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피보전권리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그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반론권’이라는 특유의 권리로 그 심판은 독특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는 특수한 소송절차이므로 이 반론보도청구의 심판 청구

에 일반 민사상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광범, 2002).

## (2) 반론권의 기원 및 외국 현황

원래 이 제도는 1799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법안으로 제출되었다가 1822년부터 입법화되어 시행된 제도이다. 애초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고안된 동기는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신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1789년 이후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출판매체가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상호비방, 부질없는 정쟁만을 일삼기에 이르자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고안해 낸 제도였다. 프랑스의 반론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논평, 의견에 대한 반론까지 인정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넓게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석천, 2002).

미국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미국의 대법원은 방송의 경우는 반론권을 인정하지만 신문의 반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방송의 반론권은 인신공격의 원칙(personal attack rule)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인신공격의 원칙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직성(honesty), 인격(character), 성실성(integrity)을 공격하는 방송을 했을 때, 방송국은 그러한 공격이 있을 후 일주일 이내에 공격을 당한 개인이나 집단에 통고해야 하며, 이들이 응답할 수 있는 합당한 방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혁남, 2002).

이 원칙이 제기된 것은 1969년 레드 라이온 방송(Red Lion Broadcasting Company, WGCB)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극단적 보수주의 ‘라디오 목사’인 빌리 하기스(Billy Hargis) 목사는 레드 라이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프레드 쿡(Fred Cook)이라는 사람과 그의 책에 대해 공격하였다. 하기스 목사는 “프레드 쿡은 누구인가? 그는 익명이지만 공개적으로 뉴욕의 한 공무원을 비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뉴욕 텔레그램(New York Telegram) 회사에서 해고된 인물이다. 또한 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쿡은 하기스 목사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200개의 방송사에 대해 무료 반론의 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레드 라이온 방송사 사주는 냉정히 이를 거절하고, 대신 쿡에게 광고요금에 준한 유료 반론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결국 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들은 반론을 위한 무료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의회와 FCC가 방송사들로 하여금 인신 공격과 정치사실에 대한 반론시간을 주도록 요구한 것은 수정 헌법 1조(언론·신문·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송과는 달리 신문의 반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은 『마이애미 헤럴드』 대 토닐로(*Miami Herald v. Tornillo*) 사건이다. 토닐로는 플로리다 주의회에 출마하였는데,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 신문이 두 번에 걸쳐 사설에서 이 후보를 공격하였다. 이에 토닐로는 이 신문에 대해 반론권을 요구하였다. 플로리다 주법에 의하면 신문에 의해 공격을 받은 후보들은 반론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권혁남, 2002).

따라서 과연 이러한 플로리다 주법이 합헌 또는 위헌 중 어느 쪽인지, 대법원의 판결에 초점이 모아졌다. 신문에 반론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유명한 법학자인 제롬 배론(Jerome Barron)이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대법원은 방송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편집자는 신문에서 무엇이 보도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신문은 방송과는 달리 독자란과 같은 여러 형태의 반대 의견 칼럼 등이 있다는 사실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

우리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였다.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1964년 제정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출판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가장 특이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언론중재제도’이다. 언론중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로,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언론기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탄압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 제도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는 언론분야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의 양적, 질적 팽창과 사회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고양으로 반론보도 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함석천, 2002).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나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일부 생략)...반론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신문,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함석천, 2002).

## 2)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차이

반론보도청구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정정보도청구권’이다. ‘정정(訂正)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실무상 인정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정정보도청구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보도가 있을 것과 ‘보도가 허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 아닌 진실에 대한 반론도 가능한 반론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반론청구는 언론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행사기간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보도 후 6개월 이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함석천, 2002).

## 3) 반론보도청구권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실제 사건에서 아래의 사유는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①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②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예를 들면, 도박을 장려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상 세 가지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본래 목적인 올바른 여론형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사유로 둔 것이다. 그밖에,

④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함석천, 2002).

#### 4) 반론보도청구 행사 절차

반론보도청구는 그 행사절차의 측면에서 볼 때 협의에 따른 행사절차, 언론중재를 통한 행사절차, 재판상 행사절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가지 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

반론요구자와 언론사는 언론중재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절차라 굳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은 특별히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추어 당사자끼리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정간법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

그 규정을 보면,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이건 방송이건, 피해자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는 날부터,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석천, 2002).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는 직접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를 거쳐야 한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언론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言論仲裁) 전치주의’(前置主義)라고 부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반론보도청구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민들 역시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자료수집과 연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법적인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언론중재제도는 헌법상 가장 기본되는 두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에서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함석천, 2002).

#### 5) 추후보도청구권

이는 반론보도청구에 유사한 것으로 오스트리아의 출판법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간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나,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나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게 되고, 그 밖에 행사요건이나 절차는 모두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함석천, 2002).

### 4. 언론계의 예방책과 대응

이제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언론소송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한 기자는 “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이 아니고서는 배겨나기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자 개인은 더욱 고통스럽다. 소송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취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기자에게 소송액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라고 독백을 하기도 한다.

언론인들의 언론소송 노이로제는 언론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취재행위와 보도를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보도를 원칙적으로 제약한다. 한 방송사는 2001년 9월 수십억 원대의 내기골프를 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기업 소유주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수형, 2002)

언론사 입장에서의 언론소송 예방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당사자에 대한 반론기회의 부여

우리는 흔히 오보, 즉 진실에 반하는 보도만이 언론소송의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법 제91조 등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보다는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심증판구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김중훈, 2002).

따라서 이제 언론사는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피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보도의 신속성과 취재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반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A는 B다'라고 보도하면서 'A는 B가 아니라고 반론하였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의문 때문에 반론보도에 대한 비판이 많다. 당사자가 반론보도와 원상회복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하나의 보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2) 베끼기식 보도의 지양

일선 취재기자들은 흔히 남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듣는 것이 겁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속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것은 특종보다는 소위 경쟁사에 물먹는 일이다. 그래서 신문의 경우 가판이 나오면 다른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낙종한 경우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 취재하여 따라잡기식 보도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선행보도의 일부를 베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베끼기식 보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중훈,

2002).

### 3) 익명보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흔히 익명보도의 원칙을 내세워 익명으로만 보도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익명보도와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니셜 처리를 하는 등으로 익명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도에서 지칭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한 보도라면 그것이 과연 언론보도로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9년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김중훈, 2002).

따라서 익명으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명예훼손 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익명보도 여부가 아니라 당해 보도내용이 후에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보도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라 하겠다. 즉, 당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도대상자는 익명보도의 경우에 실명보도의 경우보다는 언론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법원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보다 적은 액수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의 경우는 사인의 경우보다 실명보도가 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대법원은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김중훈, 2002).

### 4) 언론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

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총 511건이 중재위에 접수되었는데, 그 중 182건(35.6%)이 합의되었고, 223건(43.6%)이 취하되었으며, 62건(12.1%)은 불성립되었다. 직권중재는 35건(6.9%)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3). 취하된 것들도 대부분 중재과정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는 모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중훈, 2002).

#### 5) 언론사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언론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사 차원에서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를 막는 1차적인 책임은 기자 개인과 언론사 자신에게 있다. 기자들은 스스로 명예훼손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를 신중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며 언론사는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언론사의 자기방어와 자율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언론사 내부 데스크와 편집인에 의한 자기검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이트 키퍼를 해야 할 데스크나 편집부에서 때로는 거꾸로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실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1) 변호사 기사 열람제

다행인 것은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변호사 기사열람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의 경우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이 언론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면서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 또는 preventive journalism)의 개념이 등장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언론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 스스로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수형, 2002).

방어 저널리즘의 핵심은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열람제다. 이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기사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지 심사하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사의 수정 또는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부인에 의한 언

론의 자기검열 또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주요 신문사들이 앞다퉈 검열전문 변호사를 채용, 기사 사전열람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모두 12명의 변호사를 고용,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 전체를 스크린하도록 한 뒤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인쇄 전까지 해당데스크와 의견교환을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도 후 소송이 제기되면 검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판결이 나오면 신문사와 해당변호사가 공동배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사 사전 열람제를 처음으로 본격 도입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996년 12월 변호사 기사 사전열람제를 공식 도입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해 7명의 중견 변호사를 선임, 매일 매일의 초판기사 제작 때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2002년 4월 이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상근변호사를 채용, ‘상시적인 기사열람’을 시도했다. (이수형, 2002).

상근변호사는 매일 오후 조선일보로 출근해 편집국 가판 기사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기자나 데스크와 즉석에서 상의하고 토론한다. 조선일보는 상근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기사열람 변호사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다른 언론사들은 조선일보처럼 상근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9명 정도의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사전 기사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 사전열람제는 변호사의 조언내용이 다소 무미건조하고 부자연스러워도 기사의 허점을 줄이고 기사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증거에 입각해 자극적이지 않은 기사내용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선기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이 기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명예훼손에 대해 아는 법률지식이 기자들의 수준보다 크게 높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너무 ‘안전’만을 고려해 별 것 아닌데도 기사화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취재보도 방해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변호사 의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수형, 2002).

## (2) 언론피해구제제도

이밖에 언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들 수 있는데,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는 장치다. 독자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언론중

재나 손해소송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손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조선일보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 MBC의 ‘시청자주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모색단계에 있으며, 성과도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 독자인권위원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동아일보의 경우 시행 1년 동안 정정보도 1건과 반론보도 1건을 심의 의결하고, 2건은 관련 부서와 신청자 간의 대화를 주선해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쳤다. 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권위부여와 사건 견제장치의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수형, 2002).

### (3) 법무보험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이 법무보험을 들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해 2000년 11월까지 시행해 왔다. 연간 5,000만~6,000만원의 보험료와 함께 소송 시 200만~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건당 5,000만원~1억 원, 연간 3억~5억 원까지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와 ‘멀티미디어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실제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액수가 적다는 이유에서 2000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스포츠조선이 2000년 10월 삼성화재와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어 실시해 오고 있다. 기사보험은 언론사가 보험회사에 매년 일정액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기사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지만 기자들의 소신 있는 기사작성을 위해 기사보험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수형, 2002).

이밖에도 언론사들은 음부즈맨 제도의 도입, 독자위원회 또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수정 헌법에 “의회는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만약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때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이다. 언론의 자유가 여타의 인격권이나 기본권

과 상충될 때 그 무게를 비교衡量하여 때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언론사와 언론인은 변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타율적 통제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만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등의 외적,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권혁남(2002),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김옥조(2001), 미디어 윤리(서울:중앙 M & B).

김재협(2002),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김종훈(2002),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언론소송 대처방안,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적 구제수단,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전원열(2002),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함석천(2002), 반론보도청구권,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언론중재위원회(2003), 2002년도 연차보고서.